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53

발의연월일: 2025. 6. 2.

발 의 자:김위상・이종배・우재준

구자근 · 김승수 · 김재섭

김선교 • 박충권 • 이달희

김소희 · 임이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 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 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 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

등·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위반행위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가중처벌한다.
- 1.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벌칙) ① (생 략)	제10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위반행위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
	2.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